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04
----------	------

발의년월일: 2020년 10월 14일

발 의 자: 송명화, 노승재, 노식래, 정진술,
송아량, 최 선, 채유미, 박기재,
서운기, 이광호, 김경영, 홍성룡,
김기덕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소연료공급 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 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의와 적용 범위 등을 수정함(안 제2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안 제4조제3항).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라.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 바.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아. 상위 법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충전(充電)시설”을 “충전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으로 하고, 제6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충전시설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 시설 등을 -----.</p> <p>4.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p> <p>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 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

-----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① --

-----.

<삭 제>

의 설치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

-----.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생략)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4조, 제7조의3, 제8조 등의 개정 조항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거나 서울시의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나,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5항 및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안 제9조에서 충전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연 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
 - 다만, 안 제7조 제5항에서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기준이나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나. 추계결과(안 제9조) ≍ 26,400천원(연평균 5,2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6,400천원으로 연평균 5,2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9조에 따른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9명 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1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나머지 7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하여 비용추계 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6,400천원
- 위원회 설치·운영 ≙ 26,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제9조)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	-	-	-	-	-	-
	소계(b)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총비용(b-a)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6,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5,280천원 ≙ 4,200천원 + 1,08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4,200천원 = 7명 × 150,000원 × 4회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080천원 = 9명 × 30,000원 × 4회

※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본료(2시간)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 15만원 적용

-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총 2명을 제외한 7명 지급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따라 3만원으로 책정: 전체 위원 9명 지급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33

e-mail : ehdus0@seoul.go.kr